

청년지원센터운영 규정

제정 2019. 07. 29.

1차 개정 2022. 04. 20.

제1조(명칭) 이 센터는 상지대학교 **부속** 청년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한다. (개정 2022.04.20.)

제2조(목적)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직무,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행정직원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상지대학교 교원(전임교원, 비전임교원), 직원(계약직 포함) 또는 취업 관련 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. 단, 외부인사의 경우 비상근으로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.

제4조(업무)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통한 취약계층 청년 발굴
2. 청년 대상 개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심층 상담
3. 청년 대상 진로지도 및 취·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
4. 청년 대상 식사지원, 법률고민 지원, 건강검진 등 삶의 질 개선 프로그램 운영
5. 청년의 사회진입 이후의 사후관리
6.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센터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

② 위원회는 8인 이내의 교내·외 인사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**학생취업지원처장**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(개정 2022.04.20.)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회 기능) ①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청년지원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
 2. 청년지원 사업의 결과(예·결산 포함) 보고
 3. 센터 운영규정의 제·개정
 4. 기타 센터 운영과 연계된 중요 사항
- ②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재정)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상지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

② 센터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 해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센터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하며, 예산은 외부기관 지원비로 충당한다.

제8조(결산 및 사업보고) 센터장은 센터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기획예산팀-390, 2019.07.29)
이 규정은 2019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기획예산팀-257, 2022.04.20.)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